

의안번호	제 472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저수지 · 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광진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6년 9월 27일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2
----------	-----

발의연월일 : 2016. 9. 27.

발의자 : 이광진, 임순목, 강현삼,
김봉희, 박병진, 장선배,
김영주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주민의 의무를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 의무 부과 내용 삭제(제8조제2항)

나. 기타 조문 정비(안 제2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 재난안전실 치수방재과와 협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 '16. 9. 5. ~ '16. 9. 25.

충청북도 조례 제 472 호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유지·관리”를 “유지 및 관리”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을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으로, “협력을”을 “협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 3. (생략)</p> <p>4. 저수지·댐의 <u>유지·관리</u>에 관한 사항</p> <p>5. (생략)</p> <p>제8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관계행정기관의 장</u>,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과 그 밖의 필요한 <u>협력을</u>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2조(기능)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유지 및 관리</u>-----</p> <p>5. (현행과 같음)</p> <p>제8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u>협력요청</u>) ----- ----- ----- <u>관계 행정기관 또는</u> ----- ----- ----- <u>협조를</u> -----.</p> <p><삭 제></p>